

# 부천시 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1년 1월 4일 부천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11년 1월 5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67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(2011. 1. 14) 상정
- 제167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(2011. 1. 14) 원안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지역경제과장 서 근 필)

### □ 제안이유

- 「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이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으로 개정(법률 제9887호, 2009. 12. 30. 공포, 2010. 7. 1. 시행)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제명 및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,
-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### □ 주요내용

- 가. 제명을 「부천시 전통시장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함(안 제명).
- 나. “재래시장”을 “전통시장”으로 변경함(안 제2조·제3조 및 제8조).

## 부천시 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부천시 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를 “부천시 전통시장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전통시장의 특화사업 및 활성화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자문·협의를 하기 위하여 부천시전통시장활성화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·협의를 한다.

1. 전통시장의 발전에 관한 사항
2. 전통시장별 차별화된 특화사업에 관한 사항
3. 판매력을 높이기 위한 경영전략 등 선진유통 경영기법의 도입 및 보급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

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부천시의회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
2. 부천시전통시장연합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
3. 전통시장업무담당국장 1명
4. 소비자단체 대표
5. 그 밖에 전통시장활성화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부위원장은 전통시장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,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위원의 임기)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.

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,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위원이 질병,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또는 관련업무담당공무원 중에서 간사 및 서기를 각각 1명씩 둔다.

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(예산의 지원) 시장은 전통시장의 특성화 및 유통산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9조(실비보상)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 중 “시행에 관하여”를 “시행에”로 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